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A Type



순번	법 조 항	주 요 내 용	벌 칙
1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해당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제16조 [관리감독자]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의 착용·점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 •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및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지정하거나 선임 또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해당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해당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을 작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 : 사무직 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매분기 3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외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외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특별교육 (일폐공간 작업 등 40개 작업) : 일용근로자 외 (16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기록 보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 :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직무미이행시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제38조 [안전조치]	•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기계·기구, 기타 설비,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및 전기·열·기타 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취급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 추락·붕괴·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등의 장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1	제39조 [보건조치]	•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원자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 배출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계측감시, 정밀공작, 단순반복작업 등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환기·채광·조명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2	제54조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 작업 중지 및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3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발생시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그 발생원인 등 기록·보존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 제출 포함)	은폐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4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보호구 착용 등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지시 제외)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5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됨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 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6	제84조 [안전인증] 제87조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유해·위험기계들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된 대상기계 등을 제조·수입하는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등 •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7	제93조 [안전검사]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안전검사 실시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8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 게시 및 해당 근로자 교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9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용기 등의 경고표시]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	제118조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α-나프틸아민 및 그 염, 디아니시딘 및 그 염, 베릴룸,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염화비닐, 콜타르피치, 크롬광 가공, 크롬산 아연, o-나톨리딘, 황화니켈류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1	제119조 [석면조사] 제122조 [석면해체, 제거]	• 건축물·설비의 철거·해체시 석면조사 실시 후 그 결과의 기록·보존 •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 건축물·설비에 함유량과 면적 이상 석면함유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해체·제거 실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 시행규칙 별표21의 유해인자에 노출 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대상 실시 - 유기화합물 등 화학적 유해인자, 소음(80dB 이상) 및 고열의 물리적 유해인자, 분진의 유해인자 - 6개월에 1회 정기적 실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3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로자 대상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2년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1년 1회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4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 시행규칙 별표22의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 근로자 대상 실시 - 유기화합물 등 화학적 인자, 소음과 진동 및 방사선 등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 •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 배치시 또는 작업전환시 작업 전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5	제164조[서류의 보존]	•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회의록(2년), 안전·보건조치에 관한사항,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B Type

순번	법 조 항	주 요 내 용	벌 칙
1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해당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제16조 [관리감독자]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의 착용·점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 ●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및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지정하거나 선임 또는 안전보건 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해당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해당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을 작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 - 사무직 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매분기 3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외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외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특별교육 (밀폐공간 작업 등 40개 작업) - 일용근로자 외 (16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기록 보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 :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직무미이행시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1	제38조 [안전조치]	●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기계·기구, 기타 설비,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및 전기·열·기타 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취급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 추락·붕괴·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등의 장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2	제39조 [보건조치]	●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애 - 사업장 배출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계측감시, 정밀공작, 단순반복작업 등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환기·채광·조명 등에 의한 건강장애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3	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안전·보건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4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5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재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및 대피할 수 있음	-
16	제54조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 작업 중지 및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미조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7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발생시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그 발생원인 등 기록·보존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전자문서 제출 포함)	은폐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순번	법 조 항	주 요 내 용	벌 칙
18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에 의한 작업금지 - 도금작업, 수은·납 또는 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취급작업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19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보호구 착용 등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지시 제외)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0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및 실시 확인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위생시설 등 장소 제공 및 이용의 협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21	제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 설비의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 작업이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2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전열해서는 아니 됨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 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3	제84조 [안전인증] 제87조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위험기계들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된 대상기계 등을 제조·수입하는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4	제93조 [안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안전검사 실시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5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 게시 및 해당 근로자 교육 	미게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교육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6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용기 등의 경고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7	제118조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α-나프틸아민 및 그 염, 디아니시딘 및 그 염, 베릴룸,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염화비닐, 콜타르피치, 크롬광 가공, 크롬산 아연, o-나톨리딘, 횡화니켈류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8	제119조 [석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설비의 철거·해체시 석면조사 실시 후 그 결과의 기록 · 보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9	제122조 [석면해체,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설비에 함유량과 면적 이상 석면함유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해체 · 제거 실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0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규칙 별표21의 유해인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대상 실시 - 화학적 인자(메탄올 등 유기화합물 114종, 구리 등 금속류 24종, 불화수소 등 산 및 알칼리류 17종, 불소 등 가스상태 물질류 15종), 소음 80dB 이상 등의 물리적 인자 2종, 분진 7종 -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 실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1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근로자 대상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2년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1년1회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2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규칙 별표22의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 근로자 대상 실시 - 화학적인자(메탄올 등 유기화합물 109종, 구리 등 금속류 20종, 불화수소 등 산 및 알칼리류 8종, 불소 등 가스상태 물질류 14종, 허가대상물질 12종), 분진 7종, 소음작업 등의 물리적 인자8종, 야간작업2종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 배치하기 전, 작업전환시 작업 전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3	제164조 [서류의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회의록 (2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